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09 발의연월일: 2020. 7. 14.

발 의 자:김진표·안규백·박광온

전용기 · 이장섭 · 최종윤

김종민 · 임종성 · 강선우

민홍철 · 김승원 · 이탄희

홍영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러닝을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념만으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이러닝사업자에 대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2조의2 및 제24조제2항·제3항 신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에듀테크"란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평가 및 분석 기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참여자 간의 소통 및 공유 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을 말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우수 에듀테크 기술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 에듀테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알선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에듀테크 관련 제품을 구매할경우 우수 에듀테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요청할 수 있다.

④ 우수 에듀테크 기술의 지정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정부는 에듀테크 분야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이러닝사업자에 대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의2. "에듀테크"란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 인공지
	능, 데이터 기반 평가 및 분
	석 기술, 스마트기기를 이용
	한 참여자 간의 소통 및 공유
	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
	태의 이러닝을 말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12조의2(우수 에듀테크 기술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
	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할
	<u>수 있다.</u>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
	에듀테크 기술의 상용화를 위
	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
	원, 투자알선 등 특별지원 사항
	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

제24조(국제협력 등) (생 략)

<u><신 설></u>

<신 설>

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에듀테크 관련제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 에듀테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 ④ 우수 에듀테크 기술의 지정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국제협력 등) <u>①</u>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정부는 에듀테크 분야의 국 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촉진하 기 위하여 국외진출에 대한 상 담·지도,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 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이러닝사업 자에 대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